

1.약관명: 금리우대 추가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04.10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금리우대 적용 ----- -<신 설> -----<신 설>--	제1조 금리우대 적용 -----□청년주택드림디딤돌대출신청가구----- 청년주택드림디딤돌대출신청가구는 1.0%p	버팀목대출 금 리 적용방식 신 설

□기본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본 금리 우대 (택 1)	☐ 다문화가구 () %p ☐ 장애인가구 () %p ☐ 신혼가구 () %p 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() %p 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자로서 한부모가구 () %p 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입주자 () %p ☐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 보훈대상자 () %p ☐ () %p	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() %p 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서 한부모가구 () %p ☐ 노인부양가구 () %p ☐ 다문화가구 () %p ☐ 장애인가구 () %p ☐ 고령자가구 () %p ☐ () %p
추가 금리 우대 ※중 복적 용 가능	☐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배우자) () %p 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신규 분양주택 가구 () %p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☐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 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 ☐ () %p	☐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() %p 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중소기업 취업(창업)청년 () %p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☐ () %p

□기본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본 금리 우대 (택 1)	☐ 다문화가구 () %p ☐ 장애인가구 () %p ☐ 신혼가구 () %p 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() %p 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자로서 한부모가구 () %p 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원주민입주자 () %p ☐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 보훈대상자 () %p 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() %p * 신혼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* 입주자와 대환대출 시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최대 5년까지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5년 이내)	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() %p 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서 한부모가구 () %p ☐ 노인부양가구 () %p ☐ 다문화가구 () %p ☐ 장애인가구 () %p ☐ 고령자가구 () %p 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() %p *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최대 4년까지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2년 이내)
추가 금리 우대 ※중 복적 용 가능	☐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□ 본인 □배우자)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5년간적용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5년간적용 ☐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 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 ☐ () %p	☐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() %p 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☐ 중소기업 취업(창업)청년 () %p * 적용일로부터최대4년간적용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☐ () %p *청년가구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 ☐ () %p

버팀목대출
금리적용
단서추가

☐ 신흥가구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추가 금리 우대 ※ 중 복적 용 가능	☐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☐ 본인 ☐ 배우자) () %p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
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
	☐ 다자녀가구 () %p	☐ 다자녀가구 () %p
	☐ 2자녀가구 () %p	☐ 2자녀가구 () %p
	☐ 1자녀가구 () %p	☐ 1자녀가구 () %p
	☐ 신규 분양주택 가구 () %p	
	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	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
	☐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 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
	☐ () %p	☐ () %p

☐ 신흥가구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본 금리 우대 (택 1)	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%p () * 입주자알 대환대출 시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(단, 최대 적용기간 15년 이내)	☐ 다자녀가구 () %p ☐ 2자녀가구 () %p ☐ 1자녀가구 () %p ☐ %p () *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(단, 최대 적용기간 12년 이내)
추가 금리 우대 ※ 중 복적 용 가능	☐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☐ 본인 ☐ 배우자) () %p * 대출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적용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
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	
	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가구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	
	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적용	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적용
	☐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 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() %p	
	☐ () %p	☐ () %p
	☐ () %p	☐ () %p

버팀목대출
금리적용
단서추가

□신생아 특례 버팀목 신청가구

구분	전세자금	
금리 우대 ※ 중복 적용 가능	일반 우대 금리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 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
	신생아 우대 금리	☐ 2자녀 () %p ☐ 3자녀 () %p ☐ 4자녀 () %p ☐ 5자녀 이상 () %p ※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 추가 우대
	기존 자녀 우대 금리	☐ 1자녀 () %p ☐ 2자녀 () %p ☐ 3자녀 () %p ☐ 4자녀 () %p ☐ 5자녀 이상 () %p ※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.1%p

□신생아 특례 버팀목 신청가구

구분	전세자금	
금리 우대 ※ 중복 적용 가능	일반 우대 금리	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() %p *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최초 대출 기한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☐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() %p *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
	신생아 우대 금리	☐ 2자녀 () %p ☐ 3자녀 () %p ☐ 4자녀 () %p ☐ 5자녀 이상 () %p ※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 추가 우대 ※ 자녀 1명당 우대금리 4년간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2년 이내)
	기존 자녀 우대 금리	☐ 1자녀 () %p ☐ 2자녀 () %p ☐ 3자녀 () %p ☐ 4자녀 () %p ☐ 5자녀 이상 () %p ※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.1%p ※ 기존 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

버팀목대출
금리적용
단서추가

□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가구 <신 설>	□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가구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구입자금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금리우대 ※ 중복적용 가능</td><td> □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() %p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</td></tr><tr><td> □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() %p </td></tr><tr><td> □ 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() %p * 대출실행 후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 </td></tr><tr><td> ※ 출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5년간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5년 이내) </td></tr></table>	구 분	구입자금	금리우대 ※ 중복적용 가능	□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() %p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	□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() %p	□ 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() %p * 대출실행 후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	※ 출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5년간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5년 이내)	금리신설
구 분	구입자금								
금리우대 ※ 중복적용 가능	□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() %p *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								
	□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() %p								
	□ 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() %p * 대출실행 후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								
	※ 출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5년간 적용(단, 최대 적용기간 15년 이내)								